

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제정	1982. 3. 23	조례 제 123호
개정	1983. 3. 2	조례 제 206호
	1983. 4. 29	조례 제 327호
	1992. 11. 14	조례 제 748호
	1994. 4. 11	조례 제 825호
	1996. 11. 13	조례 제 968호
	1998. 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3. 10. 9	조례 제1314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09. 4. 10	조례 제1652호
일부개정	2011. 4. 15	조례 제1766호(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의료법」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8. 6. 16>

1.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: 별표 1의 지급구분표
2.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2의 지급구분표

제3조 삭제 <96. 11. 13>

제4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과 바목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, 납골시설의 관리·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09. 4. 10, 2011. 4. 15>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)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 9 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구	분	월 가 산 지 급 액
4급이상		300,000 원
5 급		50,000 원
6급 및 7급, 기능직 7등급이상		35,000 원
8급이하,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		30,000 원
기능직 10등급, 고용직 공무원		25,000 원

③(폐지조례)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(1981. 7. 1 조례 제20호)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부칙 <1983. 3. 2>

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85. 4. 29>

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2. 11. 14>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.

②(방법수당 가산금지급에 관한 경력인정)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법 경력은 '89. 3. 1이전(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) 자율방법경력으로 경찰서장발행경력증명서에 의거 인정한다.

부칙 <1994. 4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6. 11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1998. 9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3. 10. 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4. 10 조례 제165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15 조례 제1766호,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[별표 1] <개정 2008. 6. 16>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갑 지	월 909,000원이하	월 818,000원이하

비고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03. 10. 9>

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급별 근무연수별	가 급	나 급
	5 년 이 상	월 1,312,000원이하
4 년 이 상	월 1,306,000원이하	월 967,000원이하
3 년 이 상	월 1,300,000원이하	월 961,000원이하
2 년 이 상	월 1,295,000원이하	월 956,000원이하
2 년 미 만	월 1,289,000원이하	월 950,000원이하

비고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[별표 3] 삭제 <96. 11. 13>

[별표 4] <개정 2009. 4. 10>

장려수당 지급액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분노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
납골시설의 관리·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